2025년도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 (반도체·디스플레이 분야 국제공동연구 자유형) 신규과제 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협력사업 발굴·지원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「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」 (반도체·디스플레이 분야 국제공동연구 자유형)의 2025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5월 9일

〈주무부처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 〈전문기관〉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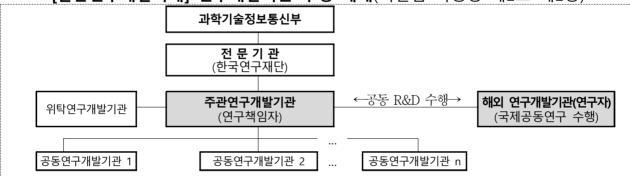
목 차

| 1. 사업개요 1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2. 지원내용 2 |
| 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3 |
| 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|
| 5.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11 |
| 6. 선정평가 14 |
| 7. 기타사항 17 |
| 8. 향후 일정[안] 20 |
| 9. 적용 법령 및 규정 20 |
| 10. 문의처 21 |

1 사업개요

- □ 사업명: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
- □ 사업목적
 - 반도체·디스플레이 주력 기술의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협력사업 발굴·지원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□ **사업기간/예산**(정부출연금): '24년~'28년 / 총 483.95억원('25년 115.86억원)
- □ 사업 내용
 - o 반도체·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자유형* 추진
 - * 국제공동연구의 상대국(기관 및 연구자 포함), 공동연구 수행방법, 연구내용 등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여 연구수행
- □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

< [일반연구개발과제]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(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) >



- **주관연구개발기관:**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**공동연구개발기관:**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**위탁연구개발기관:**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를 위탁받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 연구개발기관(해외연구자)을 활용하여 국내 연구개발과제 수행
- 해외 연구개발기관(이하 "해외기관"이라 한다)은 중앙행정기관의 장(전문기관의 장)과 협약을 체결 하지 않음
- 해외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에 참여
- 국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중 '연구개발기관 외 기관' 란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의 명칭을 작성하고 공동연구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명시
- ※ 국제공동연구 관련 안내사항은 '별첨 4. 신규과제 신청 FAQ' 등 참고

|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| 212104 | =#01TI | TIOL | - curso | HHOM | E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|
| (해당 시 작성) | 기관명 | 책임자 | 직위 | 휴대전화 | 전자우편 - | 역할 | 기관유형 |
| 공동연구개발기관 | | | | | | | |
| 위탁연구개발기관 | | | | | | | |
|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| T T | | | | | | |
| | 성명 | | | | 직위 | | |
|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| 직진 직진 | 강전화 | | | 휴대전화 | | |
| STESM | 연락처 전지 | 우편 | | 국 | 가연구자번호 | | |

2 지원내용

□ 지원분야

| 세부사업 (내역사업) | 연구주제명 | 과제당 총연구비 (억원) | 선정 예정 과제 수 | 과제형태 | 보안등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 (반도체·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) | 자유형 [*] | 9 | 6개** | 일반 연구개발 | 일반 |

* 지원분야: 반도체(소자·설계·공정·첨단 패키징 등) 분야

** 반도체 분야 6개 선정 예정

□ 지원기간 및 연구비(정부출연금) 규모

(단위: 억원)

| 총 | 1차년도 | | 2차년도 | | 3차년도 | | 4차년도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연구기간 | 연구기간 | 연구비 | 연구기간 | 연구비 | 연구기간 | 연구비 | 연구기간 | 연구비 |
| 2025.7.1.~2028.6.30. (3년) | 2025.7.1.~ 2025.12.31. | 1.5 | 2026.1.1.~ 2026.12.31. | 3 | 2027.1.1.~ 2027.12.31. | 3 | 2028.1.1.~ 2028.6.30. | 1.5 |

※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, 예산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 또한,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

※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

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3

□ 신청자격

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※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
-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제3호

-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.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.단체를 말한다.
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나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-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바.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사.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시행령 제2조

-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.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- 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 "특정연구개발 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 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

- 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- 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- 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- 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- 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・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6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・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.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- 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-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제15조제2항

제15조(협약의 체결)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ㅇ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
-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- 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- 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- 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- 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- 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
- 2.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- 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
-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

-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 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(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

"BBB"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사업개시일로 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

-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-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 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 - ※ 단,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*,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
 - *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+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"0" 이상인 경우(단,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(우선주) 자본금에 한함)
-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 - ※ 단.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- □ 신청제한 사항
- ①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
- (참여제한 중인 자)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.
 단,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책임자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 - 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59조 제1항
-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-3책 5공)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,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(관련: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)
 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'책',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'공', 모든 참여연구원은 '공'
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
 - ※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(3책 5공)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선정 취소(협약해약) 사유에 해당
 - ※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, 해당 공고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 선정

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
- 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- 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
- 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- 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제5조제1호·제2호의 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- 4의2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- 5.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-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 - 나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고시)

제4조(참여연구원 기준) ①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(이하 "참여 연구원"이라 한다)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.

- ②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.
- ③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.
- (인건비 계상률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*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 - 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 =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/ 연 급여)
 - **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%(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),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는 100%만 참여 가능

②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

- o (연구기관 구성 제한)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 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*으로 구성해야 함
 - *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시, 법인인증서 사용)
 - ※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
 -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| < | 동일기관 | 과제 | 구성 | 제하 | 사례벽 | 신청 | 가능 | 여부 | > |
|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|
| | | | | | | | | | |

| 연구개발기관 구분 | 사례1 | 사례2 | 사례3 | 사례4 | 사례5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주관연구개발기관 | A기관 | A기관 | A기관 | A기관 | A기관 |
| 공동연구개발기관1 | B기관 | A기관 | B기관 | B기관 | B기관 |
| 공동연구개발기관2 | C기관 | B기관 | B기관 | C기관 | C기관 |
| 위탁연구개발기관 | D기관 | D기관 | C기관 | A기관 | B기관 |
|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| 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 불가능 |

③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

- (중복 신청 제한(1))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 내 '24년 선정과제(한-미국 립과학재단(NSF) 반도체 공동연구, 한-EU 반도체 공동연구, 반도체・디스 플레이 분야 국제공동연구 자유형)에 신청한 연구책임자(주관/공동/위탁)는 본 공고(반도체・디스플레이 분야 국제공동연구 자유형)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(주관/공동)로 신청을 제한함
-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복 신청과제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서 제외
- o (중복 신청 제한(2)) 연구책임자(주관/공동/위탁)는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-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복 신청과제가 공동/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서 제외 ※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
- (유사과제 신청 제한)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 (타부처 포함)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 - % 차별성 검토 방법: www.ntis.go.kr 로그인 \rightarrow 과제참여 \cdot 관리 \rightarrow 차별성검토
 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
4 │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 - ※ (1)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(HMP)과 (2) 기타증빙 1개 파일(PDF)로 각각 업로드(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/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,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)

연구과제 **신청완료**

| 접수 전 필속 | 수 이행사항 | | | 신청 | |
|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구(책임)자가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.갱신 (학력, 경력 등) |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 | \Box |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| |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·승인 |
| ① 연구자 | ② 주관연구기관 | | 연구책임자 | | 주관연구기관장 |

- ※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/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.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
- 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
 - 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 - 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 - ※ ① and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- 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 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**반드시 신청기간 시작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**
 - ※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: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
 - 시설장비 등록방법: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>[R&D고객센터]>[보유장비정보] 메뉴에서 등록
 - <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 >
 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 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 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 - 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- 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-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://www.iris.go.kr) 로그인
 - \rightarrow 우측의 'R&D 업무포탈' 클릭 및 접속 \rightarrow R&D 고객센터 \rightarrow IRIS 사용 매뉴얼
 -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 - 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상단의 '최종확인' 완료 이후 '제출'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□ 제출서류

- ㅇ 2025년도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
- ㅇ 2025년도 신규과제 기타증빙(별첨자료) 1부
 - ※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
 - ※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
 - ※ 필수(해당 시 필수 포함)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.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단 1개의 기관이라도 미제출 시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<별첨 서류 목록>

| 구분 | 목록 | | ᅨ출주치 | 1 |
|-----|--|----|------|----|
| 7 | 77 | 주관 | 공동 | 위탁 |
| □ 연 | 구개발계획서 | 0 | - | - |
| 1 | [필수]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| 0 | 0 | |
| 2 | [필수] 국제공동연구 관련 기관 협의 증빙자료* | 0 | _ | - |
| 3 | [필수]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 | 0 | 0 | 0 |
| 4 | [해당 시]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| 0 | 0 | 불가 |
| 5 | [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]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| 0 | 0 | 0 |
| 6 | [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]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| 0 | 0 | 0 |
| 7 | [해당 시] 기관 지원확약서 | 0 | 0 | 0 |
| 8 | [해당 시]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| 0 | 0 | 0 |
| 9 | [협약 시]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·보완 대비표 | 0 | - | - |
| □기 | 타 관련 증빙 자료(1개 파일(PDF)로 제출) | | | |
| 1 | [필수]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| 0 | 0 | 0 |
| 2 | [필수] 개인정보·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, 제3자 제공 동의서 /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| 0 | 0 | 0 |
| 3 | [해당 시] 보안서약서 ※ 보안과제만 제출 | 0 | 0 | 0 |
| 4 | [협약 시]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| 0 | 0 | 0 |

^{*} 해외 연구기관의 참여 의지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, 협약 시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등 서류 제출 필요

□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

○ 목차 1.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~ 5.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

|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| 계획서 분량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연 5억원 미만 | 30쪽 이내 |

[※] 제한 분량 미준수 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□ 신청기간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(신청 마감일) | 2025.5.9.(금) ~ 6.10.(화) 14:00:00까지 |
|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| 2025.5.9.(금) ~ 6.10.(화) 18:00:00까지 |
| 신청 절차 |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 |

- 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
- 연구책임자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주관연구개발기관: [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 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・승인 가능함)
-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(마감기한 연장 불가)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ㅇ 사업공고별 응모 수가 선정 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
 - ※ 단.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
 - ※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실시
- o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, Data Management Plan)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, 미제출 시 평가 제외
- ㅇ 사업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사업공고 내 명시된 공동,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, 미준수 시 평가 제외
- 평가위원회·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-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(단, 참여제한의 경우

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
-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o 선정 후 주요사항(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)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
-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 - ※「과학기술기본법」,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등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경우, 별도 공지 예정
- 연구책임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7조,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* 현황정보**를 포함하여야 하고, 과제 수행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(권고) 현행화(IRIS 활용)
 - * 국외수혜: 외국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·행정적(연구과제, 인력, 장비, 시설) 지원 및 강의· 자문·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(단순 문의·제안·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)
 - ** 지원·지급 출처, 사유, 기간, 내용,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

시행령 제9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)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- 8.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
- o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/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,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 - *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('24.3, 한국연구재단) 참조
- ㅇ (해당 시) 3천만원~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
 - 필수 제출 서류: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,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(단,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)
 - ※ [근거]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, 1억 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
 - ※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' 별도 심의 신청 필수
 - ※ 계획서 상 '연구시설·장비 구축·운영 계획'에 관련 내용 명시
- o (해당 시)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」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
 - ※ 단,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,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

□ 연구개발과제 신청 체크리스트

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. 신청 전/후 준비사항을 **모두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**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이외에도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사전검토 시 탈락될 수 있음.

| 신청 전 체크리스트 | 확인 |
|---|----|
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서 신청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, 사업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모두 조치하였고, 미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. | |
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NRI) 가입 및 이용방법에 관한 질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 IRIS 콜센터 1877-2041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. | |
|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14:00:00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4:00:00이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. ※ (IRIS) [최종확인]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[제출]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함을 알고 있다. | |
|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며,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. | |
|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을 인지하고 있다. | |
| 신청하는 사업의 평가방법 및 일정 을 확인하였다. | |
| 사업 신청 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가 확정된 것(accepted; in press 포함)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. | |
| (IRIS) 업로드 가능 파일 개별 용량은 500MB, 과제 내 전체 용량은 2GB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. | |
| 신청 중 체크리스트 | 확인 |
|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,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, 반드시 다시 [최종확인]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[제출]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을 알고 있다. ※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가능 | |
|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제한을 준수 하였고, 작성분량 초과 시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. | |
|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(별첨자료) 중 필수(해당 시 필수 포함) 문서 미제출 시 선정평가에서 제외 (주관.공동.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단 1개의 기관이라도 미제출 시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)됨을 알고 있다. | |
| 신청하는 사업의 연도별 직접비 신청금액과 금액단위를 정확히 입력 하였다. | |
| 신청 후 체크리스트 | 확인 |
| 업로드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대한 확인 (최종본, 암호해제, 오류확인 등)을 하였다. | |

6 선정평가

□ 추진근거

-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, 제14조 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-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
-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선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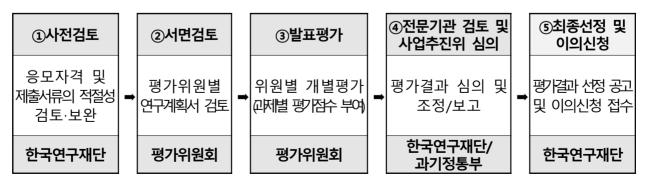
□ 기본방향

-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
-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
-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
 - ※ 평가점수가 70점 미만(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도 동일)은 탈락 처리함
-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,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
- ㅇ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□ 평가방법

- o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7조에 따라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 과제평가단(이하 "평가위원회")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, 온라인/현장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
 -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
 - ※ 평가대상 과제규모,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,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
 - ※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

□ 평가절차



※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

 (사전검토)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,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

사전검토 항목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)

-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
-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
 - ※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,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
- (평가위원회 평가)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
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
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www.ntis.go.kr)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 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
 - ※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
 - (해당 시)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연구 시설·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
 - ※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시설·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,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
- ㅇ 평가항목 및 배점

| 평가항목 | 세부항목 및 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|---|-----|
| 기술성 (50) | 연구개발 내용의 창의성, 원천성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, 탁월성,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방법 및 추진 체계의 적절성(국제공동연구 포함) 공동연구개발 성과 소유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| 50 |
| 연구역량 | 연구책임자 및 국내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연구개발 참여 해외연구자(연구진) 역량의 우수성 | 20 |
| (30) | 연구 기반 구축 수준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원 의지 | 10 |
| 파급성 (20) | 연구 결과·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| 20 |
| | 합 계 | 100 |

- (이의신청)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
 - (인정 범위)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, 평가위원,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

□ 평가 기타 사항

- (차별성 검토)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을 검토함
 - 전문기관은 접수과제를 전수 조사하여 차별성 점수 30점 미만 과제를 차별성 검토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신
 -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
 - ※ <차별성 검토 기준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12조제3항> 1.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, 2. 연구개발 주제·목표·수행방식의 차이점
- ㅇ (동점자 처리)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*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* 평가항목 평가 점수: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

7 기타사항

□ 연구과제 상세 계획

-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 10억원 이상과제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최종협약 전 연구목표 및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는 PM과 연구자 간 심층 논의를 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·보완하는 상세계획단계 추가 수행(해당 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)
 - 과제 제안요구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,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,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

□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

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)는 개인사업자,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, 사전조사・기획평가,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・관리, 인문・사회분야, 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-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,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·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,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□ 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□ 향후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·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

□ (필수) 연구데이터 관리

- 본 과제 선정 시,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'데이터관리계획'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(계획서 첨부 양식)
 - ※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
 - 선정평가-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
 -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, 장소, 기간,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
 - ※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(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, 논문·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)

□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

-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
-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
 -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
 - *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)
-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,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~17조
-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□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ㅇ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

〈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〉

□ 중소·중견·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

○ 2025년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·중견·대기업에 대하여「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시행령」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

[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]

1.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

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.

| 구분 지원기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|
| 개발기관 | 100분의 75 이하 |
| 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|
| 개발기관 | 100분의 70 이하 |
| 다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|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|
| 하는 연구개발기관 | 100분의 50 이하 |

2.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.

| 구분 | 현금부담 비율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기관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|
| 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| |
| 다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|
| 라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하는 연구개발기관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|

3.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
- 나. 연구시설ㆍ장비비
- 다.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
- 라. 소프트웨어 활용비
- 4.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.

비고

- 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 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. 다만, 사회·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.
- 2. 제2호에서 "평균매출액등"이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.

8 향후 일정(안)

| 일정 | 내용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2025.5.9.(금) ~ 6.10.(화) 14:00 | 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 | |
| 2025.5.9.(금) ~ 6.10.(화) 18:00 | 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 | |
| 2025.7월 | 선정평가 실시 | |
| 2025.7월 |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| |
| 2025.7월 |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| |

- 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
- ※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

9 적용 법령 및 규정

□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

| 근거법령 | 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, 연구지원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,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○ 기타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,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|
|------|--|
| 관련규정 |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|
| 기타 | o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o 2025년도 ICT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|

10 문의처

□ 문의 절차

※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"

문의전확인 공고문,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.

(1차) 연구자 ➡ 주관연구기관에 문의
(2차) 주관연구기관 ➡ 한국연구재단에 문의

공고자료 확인 공고문, 신청요강 내용을 숙지

공고내용을 숙자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

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o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https://msit.go.kr) → 소식 → 사업공고
- \circ 한국연구재단 (https://www.nrf.re.kr) \rightarrow 사업안내 \rightarrow 사업공고 \rightarrow 사업공지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gaia.go.kr) 접속
 - 법, 규정, 규칙: 「자료실」→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→ '공통 법·규정', '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' 관련 규정 확인
 - 「자료실」→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→ '공통 법·규정' → '국가연구 개발혁신법'관련 확인

□ 문의처: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

| 구분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이메일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| IRIS 콜센터(1877-2041)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| | |
| 사업 관련 문의 | ᄖᄔᆮᆉᆘᆮᆝᇫᄑᆌᄭᄓ | 042-869-7869 | tae@nrf.re.kr |
| 접수, 양식 관련 문의 | 반도체·디스플레이단 | 042-869-7868 | nano123@nrf.re.kr |
| 평가 관련 문의 | 국가전략사업 평가2팀 | 042-869-7743 | yang@nrf.re.kr |
| | 국기인국사합 경기2림 | 042-869-7748 | nrfev2@nrf.re.kr |

- 붙임 1.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서식
 - 2. 신규과제 기타증빙(별첨자료) 서식
 - 3. 참고자료(신규과제 신청 FAQ, IRIS 관련 매뉴얼 등)